

서울특별시농산물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농산물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농산물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농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공기업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”을 “「지방공기업법」”으로 하고, “서울특별시농산물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를 설립하고 공사의 업무”를 “서울특별시농산물공사를 설립하고, 그 업무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공사”를 “서울특별시농산물공사(이하 “공사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자본금은 3천 500억원”을 “수권자본금은 1조원”으로, “출자한다”를 “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11인”을 “11명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사장추천위원회”를 “서울특별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정관에서 정하는 순위”를 “정하는 순위”로 한다.

제12조 중 “상임의원”을 “상임임원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15인”을 “15명”으로 한다.

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8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으로 하며,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9.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

제18조제1항 중 “법”을 “「지방공기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각각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지방공기업법시행령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”를 “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으로 한다.

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으로 한다.

제33조제2항 중 “영”을 “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”으로,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.

제34조제2항 중 “지방공기업법시행령”을 “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지방세법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세부과징수규칙”을 “「지방세법 시행규칙」 및 「서울특별시세 부과징수규칙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	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설립및운영에 관한조례			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의 원활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<u>지방공기업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</u>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<u>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</u> 를 설립하고 공사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의 원활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<u>지방공기업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</u>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<u>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</u> 를 설립하고 공사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-----	-----	----- ----- ----- 「지방공기업법」 ----- ----- <u>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를 설립하고, 그 업무</u> ----- -----
제2조(법인격) <u>공사</u> 는 법인으로 한다.	제2조(법인격) <u>공사</u> 는 법인으로 한다.	제2조(법인격) <u>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</u> -----	-----	-----
제4조(자본금) ① 공사의 <u>자본금은 3천 500억원</u> 으로 하고 서울특별시가 전액 출자한다. ② (생략)	제4조(자본금) ① 공사의 <u>자본금은 3천 500억원</u> 으로 하고 서울특별시가 전액 출자한다. ② (생략)	제4조(자본금) ①----- <u>수권자본금은 1조원</u> ----- --- <u>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.</u> ② (현행과 같음)	-----	-----
제5조(정관)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<u>각호</u> 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 1. ~ 12. (생략) 13. <u>기타</u> 필요한 사항 ② (생략)	제5조(정관)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<u>각호</u> 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 1. ~ 12. (생략) 13. <u>기타</u> 필요한 사항 ② (생략)	제5조(정관) ①----- <u>각 호</u> ----- 1. ~ 12. (현행과 같음) 13. <u>그 밖에</u> ----- ② (현행과 같음)	-----	-----
제7조(임원) ① <u>공사</u> 에는 사장을 포함	제7조(임원) ① <u>공사</u> 에는 사장을 포함	제7조(임원) ① -----	-----	-----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<p>한 <u>11인</u> 이내의 이사와 감사를 두며,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.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	<p>--<u>11명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,</p> 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조(사장) ① 공사의 사장(이하 “사장”이라 한다)은 <u>사장추천위원회</u>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<u>정관에서 정하는 순위</u>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.</p>	<p>제8조(사장) ① -----</p> <p>-----<u>서울특별시공사시장추천위원회</u>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-----</p> <p><u>정하는 순위</u>-----</p> <p>-----,</p>
<p>제12조(임직원의 겸직제한)공사의 상임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, <u>상임의원</u>은 시장의,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</p>	<p>제12조(임직원의 겸직제한)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u>상임임원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,</p>
<p>제14조(자문위원회) ① 공사에 위원장을 포함한 <u>15인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두며,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, 운영 및 공사의 경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사장의 자문에 응하게 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4조(자문위원회) ① -----</p> <p>-----<u>15명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,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5조(사업) 공사는 다음 <u>각호</u>의 사업을 수행한다.</p>	<p>제15조(사업) -----<u>각 호</u>-----</p> <p>-----,</p>

<p>1. ~ 7. (생 략)</p> <p>8. <u>기타</u> 개설자가 도매시장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사업</p>	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<u>그 밖에</u>----- ----- -----</p>
<p>9. 제1호 내지 제8호의 부대사업</p>	<p>9.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</p>
<p>제18조(사업계획 및 예산) ① 사장은 매 사업 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<u>별</u> 제6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사업 년도 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⑤ (생 략)</p>	<p>제18조(사업계획 및 예산) ① ----- ----- <u>「지방공기업법」</u>(이하 <u>“법”</u>이라 한다)----- ----- -----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1조(손익금의 처리) ① 공사는 결산한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<u>각호</u>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.</p> <p>1. ~ 4. (생 략)</p> <p>② 공사는 결산한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다음 <u>각호</u>의 순위로 이를 처리한다.</p> <p>1. ~ 3. (생 략)</p>	<p>제21조(손익금의 처리) ① ----- ----- <u>각</u> <u>호</u>----- 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각 호</u>----- ----- 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1조의2(대행사업의 비용 부담) ① <u>법</u>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<u>각호</u>와 같다.</p> <p>1. <u>지방공기업법시행령</u>(이하 <u>“영”</u>이</p>	<p>제21조의2(대행사업의 비용 부담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각 호</u>----- 1. <u>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</u>-----</p>

<p>라 한다) 제63조 의 규정에 의한 경비</p> <p>2. (생 략)</p> <p>3. <u>기타</u> 성질상 공사에서 부담할 수 없는 경비</p>	<p>-----</p> <p>--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그 밖에</u>-----</p> <p>-----</p>
<p>제23조(감독) ① (생 략)</p> <p>② 공사는 다음 <u>각호</u>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<u>기타</u>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p> <p>3.~ 4. (생 략)</p>	<p>제23조(감독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<u>각 호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그 밖에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3. ~ 4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3조(업무상황공표) ① (생 략)</p> <p>② 사장은 결산서, 재무제표, 연도별 경영목표, 경영실적평가결과 및 영 제 44조제1항 <u>각호</u>의 사항을 시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③ 사장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2,500분의1 이상의 연서로 법 제 46조제2항 의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자료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.</p>	<p>제33조(업무상황공표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</p> <p>-----<u>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</u>-----<u>각 호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<u><삭 제></u></p>
<p>제34조(과태료) ① (생 략)</p> <p>② 과태료의 금액은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, 위반행위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</p>	<p>제34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별표와 같다.
③ ~ ⑤ (생 략)
⑥ 과태료의 부과·징수 및 체납처분
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
제외하고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및 서
울특별시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 한
다.

---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---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-----

-----「지방세법 시행규칙」 및
「서울특별시세 부과징수규칙」-----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